

의안번호	제 89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2월 일 (제296회)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0년 11월 30일

#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규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0년 11월 30일

발 의 자 : 황규철 · 윤성옥 · 박문희 · 정 현 ·  
김봉희 · 김희수 · 김종필 의원( 7명)

의안 번호	89
----------	----

## 1. 제안 이유

-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안 제1조 ~ 안 제5조, 안 제13조)
- 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안 제12조)
- 다. 일부 조항의 신설(안 제3조제4호, 제5호)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2010년 도비 63,593천원 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의 제목 “(연구기능)”을 “(연구센터의 기능)”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연구개발

제3조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민에게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한 자생식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
5. 자생식물의 신제품 육성 고품질 상품개발, 특허화를 통한 지역소득의 증대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센터장이나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제3조, 연구원은 제30조에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관리권한) 연구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연구센터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 연구소 내에 둔다.</p>	<p>제2조(위치)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내에 둔다</p>
<p>제3조(연구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행한다.</p>	<p>제3조(연구센터의 기능) ----- -----.</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4.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연구개발</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도민에게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한 자생식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p> <p>5. 자생식물의 신제품 육성, 고품질 상품개발, 특허화를 통한 지역소득의 증대</p> <p>6.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연구개발</p>
<p>제4조(구성및위촉) ① (생략)</p> <p>② 센터장은 연구소장 또는 수목 및 산야초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제4조(구성및위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충청북도지사</p> <p>(이하 "도지사"라 한다)-----.</p>
<p>제5조(임기) ① (생략)</p> <p>② 센터장 또는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제5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센터장이나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제12조(여비지급) ① (생략)  ②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거 센터장은 제3호, 연구원은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여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제3호, 연구원은 제30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결과의 관리권한) 당해 연구센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관리권한) 연구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별표 1] &lt;개정 2009.4.30&gt;

##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 (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 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p>제2호</p>	<p>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원,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p>
	<p>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p>

[별표 9] &lt;개정 2007.11.13&gt;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 공립학교 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무원 임용령」 별표 7의 겸임예정직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